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(이건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68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28.

발 의 자 : 이건태 · 진선미 · 김병주
박균택 · 정준호 · 문진석
전용기 · 박상혁 · 박희승
최혁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조합의 총회는 조합장 직권 또는 조합원 및 대의원의 일정 비율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총회는 조합장만이 소집 가능함.

그런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장의 사임, 해임,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장의 공백이 발생하거나,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총회 소집 요구가 있음에도 조합장이 따르지 않는 경우 총회 소집이 사실상 어려워 사업 추진에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.

이에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조합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감사가 조합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, 감사가 소집하지 않는 경우 소집을 요구한 자의 대표가 소집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 사업의 안정적이고 투명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(안

제44조제3항 신설 등).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조제5항을 제8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6항(중전의 제4항) 중 “제2항 및 제3항에”를 “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총회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로서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조합장이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감사가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하며, 이 경우 감사가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.

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총회 소집을 요구한 자의 대표가 소집하며, 이 경우 해당 대표가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.

⑦ 제3항이나 제4항에 따라 감사 또는 총회 소집을 요구한 자의 대표가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미리 시장·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48조제3항 전단 중 “제44조제5항”을 “제44조제8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총회의 소집에 관한 적용례)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4조(총회의 소집) ①·②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44조(총회의 소집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제2항에 따른 총회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로서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조합장이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감사가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하며, 이 경우 감사가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.</u>
<u><신 설></u>	<u>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총회 소집을 요구한 자의 대표가 소집하며, 이 경우 해당 대표가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.</u>
<u>③ (생략)</u>	<u>⑤ (현행 제3항과 같음)</u>
<u>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 목적·안건·일시 및 장소와 제4</u>	<u>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-----</u> ----- ----- -----

5조제5항, 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의결권의 행사기간 및 장소 등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⑤ (생략)

제48조(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)

①·② (생략)

③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소집 절차·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44조제5항, 제44조의2 및 제45조제3항부터 제11항까지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총회”는 “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”로, “조합”은 “사업시행자”로, “정관”은 “시행규정”으로, “조합원”은 “토지등소유자”로 본다.

-----.

⑦ 제3항이나 제4항에 따라 감사 또는 총회 소집을 요구한자의 대표가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미리 시장·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⑧ (현행 제5항과 같음)

제48조(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)

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제44조제8항-----

-----.

-----.